

「공익제보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공청회

일시 : 2017. 5.30. (화),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내부제보실천운동>

고문 : 강만길, 백낙청, 신경림, 이문옥, 조정래, 청화스님, 함세웅신부

자문위원 : 강기석, 김종철, 김태준, 문성근, 성해용, 송주명, 신학림, 이시영, 정남기, 조은

공동대표 : 김병후, 김용휘, 김주언, 권오광, 박대성, 송병춘, 양시경, 유영권, 허태곤

상임대표 : 백찬홍, 이지문, 한만수

<국회의원 이정미>

■ 공청회 일정표

시간	내 용	
10:00 ~10:10	개회식	사회자 - 김현진 (내부제보실천운동 홍보위원장) 인사말 -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이문옥 (감사원 전 감사관) 한만수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10:10 ~10:20	축사	정성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10:20 ~10:50	법안 발표	김형남 (변호사 : 신아법무법인 대표)
10:50 ~11:20	토론	토론사회 - 백찬홍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토 론 - 김영수 (군납비리 내부공익제보자) 양동훈 (국민권익위 공익심사정책과장)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장정욱 (서울시 옴브즈만 위원) 조호연 (경향신문 논설위원)
	폐회 및 기념촬영	질의, 응답 및 참석자 전원 토론
11:20 ~11:50		토론회 정리 및 마무리

* 당일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 차

공익제보자보호법 신설법률안	1
공익제보자보호법 제정법률안	11
현 공익신고자보호법	33
토 론 문	53
김영수 (군납비리 내부공익제보자) -----	55
장정욱 (서울시 옴브즈만 위원) -----	61

공익제보자보호법 신설법률안

공익제보자 보호법 신설 법률안 (내부제보실천운동 입법청원안)

의 안 번 호	
------------	--

발의연월일 : 2017. . .

발 의 자 :

의원(인)

제 안 이 유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은 공공기관과 행정기관등(이하 ‘공공기관등’)의 ‘부패행위’에 관한 제보와 제보자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충민원에 대한 접수.조사.처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까지를 포괄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부패방지법의 목적과 취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등의 부패행위 제보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고, 부패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호.보상대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제보자에 대한 피제보기관의 보복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 또한 미흡하다.

민간분야의 부패행위에 대한 제보.접수.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익제보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 제한하였고, 그 대상법률도 279개 법률로 한정하였으며, 공공기관등 및 민간조직(회사, 법인 등)의 대표적인 부패행위(형법상 뇌물, 횡령, 배임 등)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조직 내에서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그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공익제보 사건의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 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보상대책이 미흡하고, 피제보 공공기관등 및 민간조직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불이익처분에 대한 실효적 대책 또한 미흡하다.

특히 부패방지법과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입법 목적과 취지가 유사(사회전반의 부패행위 발생 예방과 효율적 규제 및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개별 법령이 복잡하고 두 법률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기 어려워 부패행위에 대한 제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보자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법적 성격(공공기관

등 또는 민간조직), 제보자의 신분(공직자등 또는 민간인)과 제보당시의 위치(조직 내부자 또는 외부자), 제보의 내용(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과 성격, 제보한 기관(조직 내부 또는 외부), 제보의 시점(언론과 국회, 시민단체를 통한 제보와 공표 시점 등), 제보의 방법(고소.고발.제보.진정.제보.수사의 단서제공 등)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법률이 다르고, 특히 제보자에 대한 보호.보상의 대상 및 내용이 다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패방지법의 '부패행위'와 공익제보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를 하나의 개념과 범주로 포괄(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포괄하여 '부정한 행위'라고 한다)하고 부정한 행위를 제보하는 모든 사람을 '공익제보자'라고 하여, 공익제보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부정한 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사건에 대한 접수.조사.처리 및 공익제보 활성화 정책을 총괄하는 '공익제보자 보호법'을 신설하고자 한다.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제정되면, 현행 부패방지법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제보 및 제보자 등 보호'는 삭제되고, 현행 공익제보자 보호법은 폐지되어 '공익제보자 보호법'으로 통합될 것이다. '공익제보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등의 부패행위와 민간영역의 공익침해 행위 및 형법상 범죄행위를 그 대상으로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법의 주관 기관은 공익제보 사건에 대한 강력한 조사권한을 갖게 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보상대책이 강화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 또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나 발생된 손해는 적극적으로 원상회복 및 구제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의 대통령 탄핵사건의 단초는 일부 민간인 등에 의한 국정농단이었고, 이러한 국정농단을 인지하고 있었던 공공기관등의 공직자 또는 민간조직(회사 및 법인 등)의 조직 내부자 및 외부 기관(조직)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피해가 두려워 이를 제보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부정부패행위에 자의 또는 타의로 동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권력형 비리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은밀하고 전문적이며 조직적인 부정부패행위가 만연되어 있고, 이러한 부정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인 특단의 대책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법이나 공익제보자 보호법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미흡하여 공익제보를 할 경우 자신이 입을 피해가 두려워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부정부패행위에 어쩔 수 없이 눈을 감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곳곳에 만연된 부정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는 공익제보를 활성화 하고 공익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법의 제정이 가장 중요하고 시 급하다고 할 것이다.

《주 요 내 용》

1.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전면개정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중 공익신고 관련 부분을 통합하여 공사의 영역을 포 괄한 공익제보자 보호법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공익제보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공 익제보의 활성화와 사회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목적)
2.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와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 개념을 통합하여 “부정 한 행위”라는 개념을 신설함(안 제2조 제1호)
3. 공익제보자보호법 상의 피제보기관을 “기관·법인·단체 등”으로 정의하여 공사를 망라한 모든 조직적 사회활동체의 부정한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제2조 제3호)
4.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에 공익제보자의 보호 뿐 만 아니라 보상해야함을 포함시킴 으로서 공익제보자의 실질적 보호와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3조 제1항) 공익제보자 보호에 성과가 있는 기관·법인·단체 등을 우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 써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함(안 제3조 제 3항)
5. 공익제보의 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하여 독립기구로써 청렴위원회를 설 치함(안제4조, 청렴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되, 조직의 근거 및 구성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에 의하도록 함)
6. 내부공익제보자의 경우 그 신분적 불이익과 요증사실과의 확실한 관련성을 감안하여 지방 자치단체, 공익제보자보호재단, 언론 또는 국회의원을 통한 공익신고를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안 제6조)
7. 내부공익제보자의 경우 그 신빙성을 감안하여 공익제보에 첨부되는 자료를 “증거” 하나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행위의 경위, 주요정보, 증거 등 부정한 행위 발견을 용이하게 하는 단서를 첨부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 제1항, 제2항, 대통령령으로 내부자 와 외부자를 분류하여 내부자의 정보제공의 경우에는 용이한 방법을 선택하고자 함)
8. 내부공익제보자의 경우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 변호사나 비영리민간단체를 통 하여 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익명으로 행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 받을 수 있도록 함(이하 제보에 따른 의사표시에 있어서 제보자와 대리인을 동일시 함(안 제8조 제4항))
9. 익명의 제보자에 의한 공익제보와 조사, 보호 및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자치단체와 공익제보자보호재단 내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공익제보상담지원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8조 제6호)
 10. 내부공익제보자가 국회의원이나 언론에 단서를 제보한 경우 의정활동이나 취재를 통하여 부정한 행위의 개연성이 발견된 경우에도 내부공익제보자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도록 함. 국회의원이나 언론은 내부공익제보자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6조의 여타의 기관에 제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 경우 최초의 단서 제공 시점에 최초의 제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안 제8조 제7항)
 11. 청렴위원회는 공익제보의 사실 내용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자들과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요구와 정보조회를 할 수 있으며, 진술청취를 할 수 있는 출두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한 경우 5,000만원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사기간은 2개월 이내이며, 1개월의 범위내에서 2차례에 걸쳐 연장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제3항)
 12. 위원회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금융자료 등을 해당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영장청구 등 법원의 강제수사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준용하여 검찰에 영장청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 내에 청렴위원회 지원 담당 검사를 두고 청렴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제4항)
 13. 위원회는 부정한 행위에 의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고 조사진행의 방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원에 현상변경행위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5항)
 14. 위원회의 조사서류 및 증거서류는 수사절차에서 획득한 자료로 보고,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강제수사의 필요성의 근거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이첩함으로써 그 수사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함
또한 위원회의 조사내용과 이첩사실을 공익제보자 측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 제6항)
 15. 위원회의 조사를 거친 공익제보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2개월 이내에 조사 내지는 수사를 종결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위원회는 그 조사와 수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의 요지를 제보자 측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 제7항)
 16. 위원회의 조사기관 내지는 수사기관에의 이첩사실을 통보받은 제보자 측은 위원회에 위원회 조사의 보완 내지는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기관 내지는 수사기관의 결과통지를 받은 제보자 측은 위원회에 조사 또는 수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제9항)

17. 위원회의 재조사 요구에 대하여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재조사와 재수사를 하여야 하고, 재조사 내지는 재수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안 제9조 제10항 내지 제11항)
18. 위원회는 고의공직자의 부정한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여야 함(안 제9조의 2, 부패방지법 상의 내용을 포섭함)
19. 위원회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범죄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9조의 3, 부패방지법 상의 내용을 포섭함)
20. 공익제보자가 보완기관 내에 증명자료 등을 보완하지 아니하여 조사 종료의 요건이 되는 경우에도 불비사유를 제출하면 조사가 종료 되지 않도록 하여, 내부공익제보자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하고자 함(안 제10조 제2항 제3호)
21.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관한 공익제보의 경우에도 공익제보자가 언론이나 국회의원에 제보함으로써 부정한 행위의 개연성이 드러난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조사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관에 조사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0조 제2항 제5호)
23. 공익제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법인, 단체에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한 현장감독관을 두고, 위원회와 공익제보자 보호재단과 더불어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통합적 현장관리시스템을 만들며, 위원회 직권에 의한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0조의 3)
24.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2조)
25. 공익제보등과 관련하여 공익제보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피해보자등에 대한 조사가 종료하는 때까지 형사소추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유예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보자의 조사보다는 제보자의 소추가 우선되는 본말전도의 현상을 막고자 함(안제14조 제2항)
26. 내부공익제보자의 경우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불이익 발생을 추정하고, 보호 조치 절차를 진행함(안 제15조 제3항)
27. 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조치의 급박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45일의 기간을 정하여 내부공익제보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처분의 잠정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5조 제4항)
28. 위원회 위원장의 잠정중단 요구를 기관·단체·법인 등의 대표자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보자는 손해의 입증만으로 위법행위나 인과관계의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책임

- 을 물을 수 있음(안 제15조 제5항)
29. 내부공익제보자의 경우 사용자 내지는 위원회에 근무의 계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보 등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30.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중에서 불이익 조치가 행하여졌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행위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제6항)
 31. 위원회는 보호조치 결정 이후 2년 동안에 걸쳐서 보호조치 이행 및 추가적 불이익 발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20조 제5항)
 32. 위원회의 인사조치 요구 및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매년 3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3년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의 2)
 33. 공익제보자에 관하여 공익제보를 방해하거나 취소의 강요, 공익제보 이후 2년 내의 불이익 조치, 불이익조치 금지요구 이후의 불이익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불이익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함(안 제23조)
 33. 공무원이 공공기관내의 불법적 정치 행위에 관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형법이나 균형법상의 기물누설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5조 제2항, 현행법은 기관내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사기관에 제보만을 허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제보를 불가능하게 함)
 34. 내부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조치가 행해진 경우에는 직전 급여의 10년간 급여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기관·법인·단체 등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 2 제4호)
이 경우 다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5.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와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함(안 제27조 제2항)
 36. 공익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29조의 2)
 37.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인한 피해 예방,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보상조치 및 공익제보사건 진행의 적정성 감시, 공익제보자에 대한 긴급구조 및 소송비 지원,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 재단법인인 공익제보자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도록 함(안제30조)
 38. 1987년 현행 개정헌법 시행 이후 내부공익제보자의 공익제보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방지하거나 재산적 이익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국가적 공익의 증진이나

사회적 투명성의 제고에 현격히 기여한 경에는 이 법 시행 이전의 제보라 할지라도, 2018. 12. 31. 까지 본법의 보상금, 포상금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안 제31조)

39.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시키고, 과태료 부과 범위를 넓히며 그 액도 상향조정함(안 제32조 내지 제33조)

공익제보자보호법 제정법률안

법률 제 호

공익제보자 보호법 제정법률안

공익제보자 보호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위하여 공·사의 영역을 망라하여, 기관·법인·단체 등 내부의 부정한 행위를 제보한 사람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시민의 권익과 공익을 보호하고, 부정부패의 발생 예방과 근절을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정한 행위"란 기관·법인·단체 등에 속해 있는 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배하거나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기관·법인·단체 등의 부당한 이익이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기관·법인·단체 등의 투명한 운영 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제보"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제보·진정·신고·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제보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익제보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를 한 경우
 - 나.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제보를 한 경우
3. 기관·법인·단체 등이란 공공기관, 민법 및 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 상법 및 기타 특별법에 따른 영리법인,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체, 그 외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모든 단체를 포괄한 모든 사회활동의 조직적 활동체를 말한다.
4. "공익제보등"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익제보자"란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6. "공익제보자 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내부 공익제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를 말한다.
 - 가. 피제보자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 나. 피제보자인 기관,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정한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제보자등의 보호·보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제보자 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제보자보호에 성과가 있는 기관·법인·단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4조(청렴위원회의 설치 및 정책수립) ① 국가는 공익제보사건의 처리와 공익제보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에 의한 독립기관인 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제보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공익제보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제보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제보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익제보

제6조(공익제보) 누구든지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내부공익제보자에 한하여 공익제보할 수 있다.

1. 부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부정한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청렴위원회
5. 국회의원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언론
7. 각 지방자치단체
8. 이 법에 따른 공익제보자 보호재단
9. 그 밖에 공익제보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공직자의 공익제보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제보의 방법) ① 공익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보서"라 한다)와 함께 부정한 행위의 경위, 주요정보, 증거 등 부정한 행위 발견을 용이하게 하는 단서를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보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위, 주요정보, 증거 등 부정한 행위 발견을 용이하게 하는 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제보를 받은 자는 제보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공익제보자가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로 하여금 제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보를 받은 자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신고에 대하여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와 논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익명으로 공익제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내부공익제보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⑥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이 법에 따른 공익제보자보호재단에 내부공익제보자의 익명 제보와 대리조사 그리고 보호·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익제보지원을 위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공익제보상담지원센터를 둔다.

⑦ 이 법 제6조 제5호와 제6호의 국회의원이나 언론에 제보를 행한 경우에 내부공익제보자의 제보가 단서가 되어 의정활동이나 취재를 통하여 부정한 행위의 개연성이 발견된 경우도 내부공익제보자는 이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회의원이나 언론은 내부공익제보자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여타의 제보기관에 본조에 따른 제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당 국회의원이나 언론에 제보된 시점에 최초의 제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9조(제보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가 공익제보를 받은 때에는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공익제보의 경위 및 취지 등 제보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제보자 또는 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보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 제보자, 부정한 행위의 당사자 및 참고인에게 자료와 진술서를 제출요구하거나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출두요구를 받은 자는 출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2차례에 걸쳐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사실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관계자들의 금융자료와 통신수단에 의한 통신내역 및 내용 등 조사사실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조사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법무부 내에 청렴위원회 지원을 담당할 검사를 두고, 본 항의 조사 외의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조사개시를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개시로 보고 여타의 강제수사권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위 조사 기간 중 급박한 위험을 피하고 조사의 진행을 위하여 법원에 기관·법인·단체 등의 현상변경행위를 금지시키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사실 확인과 조사를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조사내용의 요지와 이첩사실을 공익제보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작성된 조사서류 및 증거자료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에서 획득한 자료로 보고, 위원회는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강제수사의 필요성의 근거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공익제보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위원회에 통보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상 2개월 이내에 조사 내지는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의 요지를 공익제보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해당 조사기관 및 부정한 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제조·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⑨ 제6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제보자는 위원회에 보완 내지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신청의 기각 내지는 보완·재조사의 결과를 사유를 붙여 통보하여야 하고, 제7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제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⑩ 위원회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9항 후문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 ⑪ 재조사·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재조사·재수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제보자에게 재조사·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고발의무) ①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정한 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정한 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성급(將星級) 장교
6. 국회의원

② 제1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의 3 (재정신청)

① 제9조의 2 제1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공익제보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공익제보를 받은 때와 위원회 등 제6조 각호의 자로부터 공익제보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조사기관은 공익제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내부공익제보자를 대리하여 제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익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제보자나 대리인이 제보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거나 불비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 경우
 4. 공익제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제보한 경우
 5. 공익제보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제8조 제7항에 의하여 제보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부정행위의 개연성이 드러난 경우는 제외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조사기관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제보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제보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제보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익제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공익제보의 접수·처리 현황 등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게 공익제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3(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현장관리시스템 운영) ① 위원회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이 법에 의한 공익제보자 보호재단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 법인, 단체와 더불어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현장관리시스템을 구축·운

영한다.

- ②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 법인, 단체에는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한 현장감독관을 두어야 한다.
- ③ 내부공익제보자의 제보가 접수된 경우, 수사기관, 조사기관, 각 지방자치단체, 이 법에 따른 공익제보자 보호재단은 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게 공익제보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2항의 현장감독관에게 내부공익제보자의 피해발생여부와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감독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내부공익제보자에게 보호조치 발생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공익제보자보호재단에 통보하고, 직권으로 본 법에 정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제보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제보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공익제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공익제보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제보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제보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제보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제보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제보자등이 공익제보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제보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 징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따라야 하며, 2개월 이내에 해당조치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보호조치 신청 등 안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본조 개정안 정부 이송 중).

1.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4.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6조의 2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안내 방안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신변보호조치)

- ①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제보등과 관련하여 공익제보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공익제보등과 관련하여 공익제보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위원회는 피제보자등에 대한 조사가 종료하는 때까지 형사소추를 유예할 수 있고, 위원회의 검찰 등에 그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익제보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제보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제보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공익제보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제보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⑤ 피제보자는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제보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제보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제보자등이 공익제보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제보자등에게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공익제보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제보자등에게 공익제보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내부공익제보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17조에 따른 제보자의 조치 요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내부공익제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보자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1. 이 법에 따른 제보로 인하여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 2. 이 법에 따른 제보로 인하여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법인 등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이익처분이 행해지거나 계속되는 경우 제보자의 손해입증으로 기관·단체·법인 등은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① 내부공익제보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제보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내부공익제보자 등이 위원회에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재취업 등 인사에 관한 조치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그의 시행을 요구할 수 있고, 기관·단체·법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제보자등은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제보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제보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제보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제보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제보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 등 또는 이 법 내지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제보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5호단서와 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명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조사하여 해당조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제보자등이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제보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疏明)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기관은 위원회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⑥ 제15조에 따른 불이익조치의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부담한다.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8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 불이익조치의 발생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① 내부 공익제보자가 제보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7.24.]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 ③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24.>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 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3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3년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 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제보자등은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제보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제보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제보자등이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의 간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제보자등이 해당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 공익제보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제보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제보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제보등이 있는 후 2년 이내에 공익제보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요구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25조(협조 등의 요청) ① 제6조에 따라 공익제보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

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정치 운동 등 제보의 특례) 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가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
 2.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정치 운동
 3. 「군형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치 관여
- ② 국가공무원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사실을 제6조 각호의 기관에 제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 및 「군형법」 제8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누구든지 제2항의 제보자에게 그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개정 2015.7.24.>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제보자는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한 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보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 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리로 공익제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내부공익제보자에게 이 법 제15조의 불이익조치가 행해진 경우(이 경우 불이익 조치 직 전 급여의 10년간 급여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기관·법인·단체 등에 구상할 수 있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입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함에 있어 월평균액이나 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⑥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28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

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9조(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의 2(손해배상책임) ①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제보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제보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입은 공익신고자 등의 피해규모
- 3. 불이익 조치의 기간·횟수
- 4. 불이익 조치를 한 자의 피해 구제

제30조(공익제보자보호재단) ①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인한 피해 예방,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보상조치 및 공익제보사건 진행의 적정성 감시, 공익제보자에 대한 긴급구조 및 소송비 지원,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 공익제보자보호재단(이하 “보호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보호재단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 ③ 보호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기념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익제보 사건의 접수, 공익제보로 인한 피해예방
 2.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보상조치와 공익제보사건 진행의 적정성 감시
 3. 공익제보자에 대한 긴급구조 및 소송비 지원
 4. 교육과 문화사업 및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5. 그 밖에 국무총리가 위탁하는 사업
- ⑤ 보호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내부공익제보자에 대한 한시적 특례) ① 현행 개정헌법 시행 이후 내부공익제보자의 공익제보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방지하거나 재산적 이익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국가적 공익의 증진이나 사회적 투명성의 제고에 현격히 기여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전의 제보라 할 지라도, 2018. 12. 31. 까지 본법 제26조 내지 제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내부공익제보자의 피해의 정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로 한다.

② 위 내부공익제보자들이 과거 다른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은 공제한다.

제5장 벌칙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제보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제보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제보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제보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제보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제보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32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7.24.]

제33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의 제보사건 조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 출석요구를 거절한 경우 및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7.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7.24.>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14830호 일부개정 2017. 04. 1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제4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 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 4.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익신고

제6조 (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

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1. 제품의 제조·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⑥ 제4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 ⑦ 위원회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 ⑧ 재조사·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재조사·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제9조의2 (보호·지원 안내)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7.4.18] [[시행일 2017.10.19]]

제10조 (공익신고의 처리)

-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현황 등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게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 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제13조 (신변보호조치)

-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책임의 감면 등)

-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④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들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들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들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 (보호조치 신청)

- ① 공익신고자들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들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들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들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제19조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疏明)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기관은 위원회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 (보호조치결정 등)

-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 ③ 제18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 (특별보호조치)

- 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제21조 (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 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 ③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제21조의2 (이행강제금)

-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 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제22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불이익조치 추정) 관련판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는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제24조 (화해의 권고 등)

-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25조 (협조 등의 요청)

- ①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 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
 2.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정치 운동
 3. 「균형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치 관여
- ② 국가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 및 「균형법」 제8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누구든지 제2항의 신고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14]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제26조 (보상금)

-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포상금)

-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제27조 (구조금)

-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28조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 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제29조 (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30조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들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30조의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제31조 (과태료)

-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부 칙[2011.3.29 제104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4 제1226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4 제134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내용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되어 조사·수사 중인 공익신고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들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7.4.18 제1483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투 료 문

공익제보자 보호강화 법률(안)
어떻게 입법화되도록 추진할 것인가
- 입법화를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을 중심으로 -

2017. 5. 30.

국방권익연구소장 김영수
(내부제보실천운동 대변인)

공익제보자 보호강화 법률(안)의 입법화 추진 방안

I. 서 언

최근 전직 대통령까지 관여된 거대한 권력형 비리가 발생되었고,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과 대기업, 국가기관은 그 어떤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국정농단 사실은 내부의 여러 공익제보자들에 의해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결연한 촛불행동으로 이러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혔을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주정부를 탄생시켰다.

새로운 정부의 주인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공약에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고, 독립적인 반부패기관인 청렴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하였고, 대선캠프에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이 위원회에 많은 공익제보 당사자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차기 정부에 바라는 공익제보자 보호강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더민당 정책위에서 일부 안건을 수용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i) 청와대에 공익제보 핫라인 구축 ii) 공익제보 사건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관(청렴위원회)을 설립/실질적 조사권한 부여, 외부 전문가 적극활용, 조사대상기관 예외 불인정 등 iii) 공익을 목적으로한 내부 공익제보의 경우 형법이나 균형법상의 기밀누설금지조항 적용 배제 iv)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었다.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공익제보자 지원센터라는 법인의 설립 및 공익제보 보호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한채 대선캠프 조직이었던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해산되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금, 과연 대선공약이었고 대선과정에서 정책으로 수용된 청렴위원회 신설 및 공익제보자 보호강화 법률(안)은 어느

조직(당 조직 또는 정부기관이나 청와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대선공약 추진이 미진하다면, 시민단체 등에서 국회나 정부에 무엇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역대 정권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선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당연히 지켜질 것이라는 안일함을 버리고 우리 단체들이 협심하여 공익제보자 보호강화 법률이 개정되고 청렴위원회가 신설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II. 법률 개정과 청렴위원회 신설 추진의 주체는 누구인가

참여연대, 내부제보실천운동 등 여러 시민단체들의 상당한 노력으로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강화가 필요하며 독립적인 반부패청렴기관인 청렴위원회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었고, 구체적인 법률안과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되어 국회나 정부에 전달되어 있다. 또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공약에 청렴위원회 신설과 공익제보자 보호강화를 선거공약으로 포함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선캠프에도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였다.

아직 이른감이 있기는 하지만, 새정부가 들어선지 약 3주가 지났으나 공익제보자 보호강화 관련 업무를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산발적인 개정안을 입법발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내부제보실천운동 등 공익제보 관련 시민단체들이 먼저 청렴위원회 신설방안 및 공익제보자 보호강화 법률안 입법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선공약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당연히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내부 공익제보 활성화는 선의의 약자 입장에서의 요구사항이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부 공익제보의 활성화는 불편한 것이 될 수 있고, 자신들의 권력을 감시받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견제할 때의 입장과 권력을 가진 상태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들도 기득권자들이고 그들도 내부 공익제보가 활성화될 경우, 그들의 권력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겉으로는 내부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조직 내부의 은밀한 부정부패를 드러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대부분 공감할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막상 자신들에게 닥칠 곤란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의 의지와 실천력만을 믿고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공익제보자 보호강화 및 청렴위원회 신설 등의 추진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강화 및 청렴위원회 신설 소위원회를 신설토록 하고 이 소위원회에 구체적인 법률개정안과 제도개선안을 제출한 후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이 공익제보자 보호강화 등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관련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해야 한다. 공익제보 사건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체적인 공익제보자 보호강화 방안 및 청렴위원회 조직구성 방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언론에 제공하고,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인 여론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내부 공익제보 사건을 실제적으로 처리한 결과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공익제보 활성화가 우리 사회의 투명성 향상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이 연합하여 ‘공

익제보지원센터'를 우선적으로 신설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배치하여 실제 공익제보 사건을 상담하고 지원하여 그 성과를 널리 홍보해야 한다.

Ⅲ. 결 언

참여연대, 내부제보실천운동 등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보호관련 시민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익제보자 보호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안과 제도개선안은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구체적인 법률안과 제도개선 방안이 국회나 정부를 통해 실현되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대선공약에 포함되었다고 정부나 집권여당이 당연히 추진해줄 것이라는 인식을 갖지 말고, 지금부터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관련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이번 기회를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공익제보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장정욱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 머리말

우리나라는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방지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 있으나, 두 법 모두 공익제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않다. 우선 신고 대상 및 보호 범위가 협소해 공익제보를 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제보자들이 있다.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제보가 반복되면서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두 법안에 반영되었으나 충분하지 않다.

이제 부패방지법(2002년 제정, 2008년 부패방지권익위법 폐지제정)은 물론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시행(2011년)한지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개편논의도 있으며,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도 구체화되어야 하는 만큼 기존 제도를 고려하되, 얽매이지 않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보다 의미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적절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 공익제보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제보자 없어야

-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 보호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공익제보의 대상이 되는 법률을 열거하고, 위반행위의 신고를 보호하고 있음. 2011년 법률 제정당시 법률에서 11개 법률을 대상으로 했고, 시행령에서 169개 법률을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던 것을 시민사회단체 등의 문제제기로 269개 법률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공익제보보호의 사각이 존재함. 특히 형법상의 배임·횡령, 회계의

조작과 같은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로 보호 받기 어려운 맹점이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이에 대한 문제의 지적이 있었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공익제보보호의 사각지대가 없을 만큼 열거하기 어렵다면, 공익제보를 위법행위의 신고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공공영역(부패신고), 민간영역(공익침해신고)의 구분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 보호해야

- 공립학교의 공익제보(부패신고)는 부패방지법으로 보호하면서도 사립학교의 공익제보는 부패방지법에서는 오랜 기간 민간영역이라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부패방지법개정논의가 있고, 공익침해행위의 범주에 ‘교육’이 포함되지 않아 공익제보를 보호하지 않았다가 최근(2017.4.18.) 개정되었음.

- 사립학교의 경우처럼 같은 형태의 부패를 공익제보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경우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가 되고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같은 기관에서 공익제보가 이뤄졌더라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공기관 지정여부에 따라서도 보호가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만약 한국재정정보원이 2017년 신규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현재 한국재정정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였다면 부패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2016년 신고했다면 부패방지법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내부의 공익제보자 보호에 집중해야

- (내부의) 공익제보자가 보호·보상을 위하여 공익제보하는 경우도 공익에 기여한다면 존중받아야 마땅함. 그러나 많은 (내부)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양심에 의해 또는 기관의 위법행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공익제보를 선택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피신고기관의 신고자 색출행위를 금지시키고, 조사기관등에서 (내부)공익제보자 신변을 노출을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악의적인 공익제보자 신변노출 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필요시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언론·시민단체에 제보하는 것을 신고로 간주하여 보호하는 것도 필요.

○ 반부패기구의 공익제보처리 실효성 강화해야

- 반부패기구의 직접 조사권한 확보.

- 재조사·재수사 요구권 강화.

- 재정신청 권한확대(직접고발하지 않은 사건 등) 및 공소유지 업무 담당.

■ 기타제안

헌법개정논의가 있는 만큼 현재 제도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재정신청 및 공소유지 역할을 넘어서 기소권 부여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익제보보호를 담당할 기관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공공·민간의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기관과 다른 형태의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 기존 행정기관을 넘어서는 권위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가 ombudsman을 선출하여 그 권한일부를 공익제보자 보호에 사용하게 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